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 업무 협약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사회적경제조직 간 컨소시엄 형성 지원,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설립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목표로 다음의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각 기관의 제도·자원·경험 등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각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

1.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형 사회서비스 통합공급 모델화를 위한 모니터링, 생태 분석, 컨소시엄 실증모델 개발 등 협력사업
2. 안정적 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 간 상호 거래, 신서비스개발, 지역자원 정보공유 등 협력성장 지원
3. 지역의 사회서비스 사회적경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생태계 조성과 주체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 사업
4.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의 성과 확산을 위한 조사, 고유기술 교류, 교육, 홍보, 정책 연계 추진
5. 그 밖에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사업

**제3조(실무협의체 구성)** 각 기관은 협력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양자간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기관의 협의로 정하기로 한다.

**제4조(비밀유지 의무)** 각 기관은 상호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타 기관의 업무내용 중 비밀유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각 기관의 합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제5조(협약효력)**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단, 협약의 해지를 원하는 기관은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하고 각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해지를 결정한다.

**제6조(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이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본 협약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서면합의 등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각 기관은 본 협약을 상호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기로 하고 이 협약서에 서명한다.

2021년 3월 31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이 병 학

이병학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김 인 선

김인선